

2022년도 본청3차[농촌신활력과]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2년도 본청 제3차[농촌신활력과]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2. 9. 19. ~ 9. 23.(5일간) / 2021. 7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9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8건 (주의 8건)
- 재정상 조치 : 해당없음
- 신분상 조치 : 1건(훈계 1)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9부. 끝.

주요 지적사항

본청3차[농촌신활력과]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9건	주의 8	훈계 1	
1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2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미반영	주의		
3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주의		
4	◦ 특별휴가사용 부적정	주의		
5	◦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추진 소홀	주의		
6	◦ 2016년 귀농인 소형농업기계지원사업 보조금 체납업무 소홀	주의		
7	◦ 보조사업 업무 추진 소홀	주의		
8	◦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훈계	
9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 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공사	19,300	(주)○○ □□□	22.04.21. (22.04.25. ~ 22.05.04.)	21,400	21,400	-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1.23. 일부개정, 2020.7.1. 시행)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 의무 및 기준)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 제도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 고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계(2건)	36,680			60,178	40,488	19,690	
○○지구 ○○마을 거점공간 편의시설 공사	17,290	(주)○○ □□□	22.03.25. (22.03.30. ~ 22.04.26.)	38,778	19,088	19,690	
○○지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공사	19,390	(주)○○ □□□	22.04.21. (22.04.25. ~ 22.05.04.)	21,400	21,400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제1호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산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지구○○마을 거점공간 편의시설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관련 제도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공기
				총공사금액	도급액	관급액	
○○지구 ○○마을 거점공간 편의시설 공사	17,290	(주)○○ □□□	22.03.25. (22.03.30. ~ 22.04.26.)	38,778	19,088	19,690	50일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 요율에 따라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구 ○○마을 거점공간 편의시설 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 제도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특별휴가사용 부적정

【현 황】

○ 특별휴가 사용현황

연번	사용일자	직급	성명	특가구분	특가사유	지적사항	비고
1	2021.07.19.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2	2021.09.09.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3	2021.11.26.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4	2021.12.10.	**6급	A	가족돌봄휴가	유아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5	2022.01.14.	**7급	B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6	2022.01.28.	**6급	A	가족돌봄휴가	유아돌봄	증빙서류 미첨부	2시간
7	2022.02.11.	**6급	A	가족돌봄휴가	유치원 졸업식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8	2022.02.15.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9	2022.02.25.	**6급	A	가족돌봄휴가	유아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10	2022.03.03.	**6급	A	가족돌봄휴가	유아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2시간
11	2022.04.20.	**9급	C	수업휴가	대학교 시험	특가구분 오류	포상휴가를 오입력
12	2022.04.29.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13	2022.05.26.	**6급	A	가족돌봄휴가	병원진료	증빙서류 미첨부	4시간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되어 있고,

○ 특별휴가 중 가족돌봄휴가는 같은 법 제7조의7(특별휴가)제9항에

따라 자녀 학교·어린이집 공식행사, 교사 상담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으로 부여받으며,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 한부모 자녀의 돌봄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최대 3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복무지침」(2021. 10.)에 따라 유급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이나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휴가를 상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승인권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휴가사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하여야 함.

- 그러나,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특별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위 [현황]과 같이 **6급 A 외 2명, 13건에 대한 결재 상신 시 관계 증빙서류 미첨부 등으로 특별휴가 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특별휴가를 신청·승인하였으며, **9급 C의 경우 포상휴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특별휴가 적용대상이 아닌 수업휴가로 특가구분을 오적용하여 신청하였음에도 특별휴가를 승인하는 등 특별휴가 사용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추진 소홀

【현 황】

○ ‘21년 ○○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

연번	지급일자	지출내역	지출금액	부적정 집행내역	비고
	합계		3,318,150		
1	21.3.12.	식대	40,000	식대인원 4명 / 명단없음	
2	21.4.23.	식대	130,000	식대인원 13명 / 명단없음	
3	21.4.27.	물티슈	1,000,000	지역개발채권 매입	
4	21.6.25.	식대	112,000	식대인원 11명	
5	21.7.1.	식대	48,000	식대인원 6명 / 회의록 참석자 4명	
6	21.8.5.	현수막	30,000	김장나눔행사	
7	21.9.10.	식대	120,000	식대인원 12명	
8	21.9.23.	식대	60,000	식대인원 5명 / 회의록 참석자 4명	
9	21.10.4.	식대	35,000	식대인원 4명	
10	21.10.29.	식대	150,000	식대인원 15명	
11	21.11.9.	식대	21,000	식대인원 3명 / 회의록 날짜(11.13.)	
12	21.11.19.	식대	130,000	식대인원 13명	
13	21.11.25.	사무용품	350,000	-	
14	21.12.13.	식대	50,000	식대인원 6명 / 회의록 없음	
15	21.12.30.	식대	150,000	식대인원 13명 / 회의록 날짜(12.31.)	
16	21.12.30.	사무용품	500,000	-	
17	21.12.30.	소모품 및 차류	359,350	지출계획에 없음	
18	21.12.30.	쓰레기 봉투	32,800	지출계획에 없음	

【위법부당사항】

1. 2021년 ○○협의회 육성지원사업 정산 소홀

○ ○○협의회 육성지원사업은 ○○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

○협의회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역량 결집 강화와 ○○ 상호간 공동체 의식 강화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조 100%(5,000천원)의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농촌신활력과에서는 ○○협의회 육성지원사업 정산 시 식대지출 관련서류인 회의록에 참석자 현황이 별첨이라고 기재만 되어있을 뿐 참석자 현황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회의 참석인원과 실제 식사인원이 상이하고, 보조금 세부집행계획과 달리 1인당 식대 단가(8,000원)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세부집행계획에도 없는 소모품 및 차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협의회 육성지원 보조사업의 지출내용을 보면 회원 간 식대지출이 대부분(총 지출 18건 중 12건)

으로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인 ○○협의회 내실화 및 ○○ 상호간 상생발전 도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농촌신활력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도하여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2021년 마을간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 마을간사 지원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활성화 및 마을의 부족한 운영인력 보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비 90%, 자부담 10%의 보조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촌신활력과에서는 매월 ○○면 ○○권역, ○○면 ○○권역 사무장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무장은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근무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담당자가 확인하거나 사업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2016년 귀농인 소형농업기계지원사업 보조금 체납업무 소홀

【현 황】

○ 귀농인 소형농업기계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납부독촉 현황

납부자명	부과금액 (원)	부과일자	납기일자	비고
D	1,300,000	2021.05.18.	2021.08.27.	20.1.3. 관외전출
		2021.10.27.	2021.12.31.	1차 독촉
		2022.01.12.	2022.02.25.	2차 독촉
		2022.03.13.	2022.04.29.	3차 독촉
		2022.05.16.	2022.06.30.	4차 독촉
		2022.09.06.	2022.11.30.	5차 독촉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6조(강제징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르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조정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016년 귀농인 소형농업기계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D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내 관외전출로 인해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어 2021. 5. 18일에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20일 이내 납부기한을 둔 독촉장 발급 및 압류조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총 5차에 걸쳐 1년 이상 납부기한을 준 독촉장만 발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압류조치를 하지 등 지방보조금 환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납부지연을 초래함.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보조사업 업무 추진 소홀

【현 황】

○ 보조사업 내역

(단위: 원)

사업명	구분	사 업 비			비고
		소계	보조금	자부담	
○○지구 ○○마을 주택정비 지원사업	계	218,142,000	158,056,300	60,085,700	
	지붕개량	69,537,000	53,463,050	16,073,950	
	집수리	105,585,000	61,573,250	44,011,750	
	빈집철거	37,020,000	37,020,000	-	
	재래식화장실	6,000,000	6,000,000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상 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사 등 발주 시, 시장·군수는 「지방계약법」, 시·군 조례 등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021년 ○○지구 ○○마을 주택정비 지원사업용역업체 선정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업지구 마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없음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 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지출일	지급명령번호	적요	지출액	연체건수	연체금액	비고
계					51	28,450	
1	2021.08.19.	40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7월분 ○○, ○○)	250,830	3	86	
2	2021.08.24.	413	전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납부(8월분)	437,610	1	392	
3	2021.08.24.	41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8월분 ○○, ○○)	154,590	3	257	
4	2021.09.14.	42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8월분 ○○, ○○)	250,550	3	207	
5	2021.10.18.	44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9월분 ○○, ○○)	228,490	1	60	
6	2021.11.05.	46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10월분 ○○, ○○)	222,370	4	315	
7	2021.12.03.	488	11월 귀농귀촌센터 전기료 납부	73,510	1	860	
8	2021.12.28.	5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12월분 ○○, ○○)	396,800	5	128	
9	2022.02.15.	1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127,140	1	123	
10	2022.02.15.	2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483,830	3	3,142	
11	2022.02.16.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상수도요금 납부(1월분)	419,560	5	12,160	
12	2022.02.22.	29	전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납부(2월분)	463,710	2	1,028	
13	2022.02.22.	3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	183,070	3	772	
14	2022.03.02.	3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90,990	1	712	
15	2022.03.02.	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80,190	1	43	

16	2022.03.14.	5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483,360	3	4,874	
17	2022.03.25.	5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171,560	2	86	
18	2022.03.25.	6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2월분 ○○)	228,270	1	63	
19	2022.05.02.	8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4월분 ○○, ○○)	488,460	2	1,864	
20	2022.05.13.	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4월분 ○○, ○○)	364,670	4	663	
21	2022.05.24.	106	전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 납부(5월분)	417,960	1	580	
22	2022.05.26.	1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기료 납부 (5월분 ○○, ○○)	231,180	1	40	

【위법부당사항】

- 「회계직원책임법」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까지 총 22회의 공공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총51건의 연체료 및 가산금(28,450원)이 발생하였음.
- 각종 공공요금의 연체료 및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회계 또는 업무담당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 따라 자비로 납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신분상 조치 : **8급 E - 훈계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현 황】

○ 집행내역

연번	제목	내부결재	품목	수량	지출과목	비고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의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21.11 .24.	컵과일	12개	업무추진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의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21.11 .25.	샤인머스켓	2상자	업무추진비	
중 략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22.08 .10.	복숭아	10상자	업무추진비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22.08 .24.	포도	4상자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농촌신활력과에서는 2021.07.01. ~ 현재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의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등 총 7회에 걸쳐 특산품 또는 홍보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농촌신활력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